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저소득 장애인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장애인시설, 장애인단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2) 지원사업 확대 추가(안 제4조)
- 3) 장애인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 개정은

관내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및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서 저소득 장애인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 지원,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필요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목적과 합치하는 데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로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로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2. 장애인의 문화,교육,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 사업

4.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지원 사업

5. 장애인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6. 장애인의 인식개선 지원 사업

7.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

8. 여성 장애인의 권익증진 사업

9.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10. 장애인 복지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세대로 한다.

2.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선정하며,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 마감일 전까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③ 군수는 제①항과 제②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평창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시설 및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4조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4호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 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진단, 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08.2.29.,2010.1.18.>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2.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①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